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목 차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I. 요약	1773
II. 부처별	1775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775
2. 국가보훈부	1776
3. 기획예산처(구 기획재정부)	1777
4. 교육부	1778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80
6. 우주항공청	1782
7. 문화체육관광부	1785
8. 농림축산식품부	1787
9. 보건복지부	1788
10. 국토교통부	1794

I. 요약

구 분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6.4.3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 재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국가보훈부	(1) 전공의 의료공백에 따른 보훈병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기획예산처	(1)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상세한 명시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교육부	(1)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 영유아보육료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기존 예산 편성과 달라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국회 보고 필요	시정	조치완료
	(2) 예비비 배정·집행 시 법령상 절차 준수 및 사업목적 외 예산 전용 재발 방지 필요	주의	조치완료
우주항공청	(1) 예비비로 편성된 일반용역비의 전용 및 이월 부적절	제도개선	조치완료
	(2) 예비비에 대한 집행관리 부적절	제도개선	조치완료
	(3)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협약 체결 부적절	제도개선	조치완료

구 분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6.4.30)
문화체육관광부	(1) 예산 이월 및 불용 규모 과다	제도개선	조치완료
	(2)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 시정 필요	주의	조치완료
농림축산식품부	(1) 예비비 배정절차 준수 및 사업효과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보건복지부	(1)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 관련 재발 방지 노력 필요	주의	조치완료
	(2) 재원마련을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이·전용 시 면밀한 추계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 파견 공중보건 의사 특별활동지원금의 기본급여중복 및 과다지급 주의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 배정된 예비비의 전용 지양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주의	조치완료
	(6)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홍보에 대한 주의 필요	주의	조치완료
국토교통부	(1) K-패스 사업 관련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지역 차별문제 해소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II. 부처별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1)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 재검토 필요	○ [지적사항]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는 자체 생산 콘텐츠가 거의 없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른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정보제공 역할이 크지 아니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 등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할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해 볼 것	제도개선	○ 2026년 1월 1일부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들을 타 유관 사이트(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미세먼지 종합포털)에 통합 조치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0일	조치완료

2. 국가보훈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1) 전공의 의료공백에 따른 보훈병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의정갈등으로 인해 보훈병원 전공의 인력이 2023년 130명에서 2024년 17명으로 급감하면서 보훈병원 진료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문의 당직 전환과 대체 인력 채용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 두 차례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함 - 그 이후 전공의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재정 소요를 각 보훈병원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보훈병원의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전공의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25.9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보훈병원도 1년 8개월 간의 전공의 공백이 해소됨 -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24.2월) 대비 74.1% 수준인 103명이 보훈병원에 복귀하였고, '26년도 전공의 정원 82명을 확보하여 충원 진행('25.12월) -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에 따라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정원 확충을 추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3. 기획예산처 (구 기획재정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1)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상세한 명시 필요	○ [지적사항]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절성과 집행의 합목적성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결산서에 목적예비비(2024년 2조 2,000억원)와 일반예비비(2024년 2조원)를 구분하여 해당 예비비 집행 내역을 국가안전보장활동 관련 내역 외에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시 필요 <table><tr><th>목</th><th>세목</th><th>세사업</th><th>금액(백만원)</th><th>예비비배정사유</th></tr><tr><td>710</td><td>01</td><td>정부예비비</td><td>355,000</td><td>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td></tr><tr><td>710</td><td>01</td><td>정부예비비</td><td>142,000</td><td>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td></tr><tr><td>710</td><td>01</td><td>정부예비비</td><td>106,500</td><td>글로벌 원자재 긴급 확보</td></tr><tr><td>710</td><td>01</td><td>정부예비비</td><td>106,500</td><td>사이버 안보 대응 경비</td></tr><tr><td>710</td><td>01</td><td>정부예비비</td><td>511</td><td>국제투자협력단 운영</td></tr><tr><td colspan="3">합계</td><td>710,511</td><td></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및 집행가능성 등 예비비 사용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며, 결산서에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구분하여 해당 예비비 집행 내역을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 내역 외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할 것	목	세목	세사업	금액(백만원)	예비비배정사유	710	01	정부예비비	355,000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710	01	정부예비비	142,000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	710	01	정부예비비	106,500	글로벌 원자재 긴급 확보	710	01	정부예비비	106,500	사이버 안보 대응 경비	710	01	정부예비비	511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합계			710,511		제도개선	○ 예산회계특별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활동과 관련된 내역 외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 결산공통요구자료, 예비비사용명세서 등 ○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로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26.1.29일 본회의 의결) *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26.4월 말 각 부처에서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 예정	조치완료
목	세목	세사업	금액(백만원)	예비비배정사유																																			
710	01	정부예비비	355,000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710	01	정부예비비	142,000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																																			
710	01	정부예비비	106,500	글로벌 원자재 긴급 확보																																			
710	01	정부예비비	106,500	사이버 안보 대응 경비																																			
710	01	정부예비비	511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합계			710,511																																				

4. 교육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1)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 [지적사항]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법령에 따른 경직성 경비로 사전에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 ※ (2022년) 179억원 전용, (2023년) 311억 6,800만원 전용, 292억 5,400만원 예비비 편성, (2024년) 212억 9,400만원 전용, 332억 5,400만원 예비비 편성 - 예산 전용과 예비비 편성이 늦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시 적정 국고보조율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대상 인원 및 단가 산출에 주의를 다하는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보육교직원 인건비 ’26년 예산 편성시 적정 국고보조율(52.8%) 및 지원대상 인원 증가(1,000명)를 반영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전년 대비 3.5% 인상하는 등 연례적 예비비 편성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2) 영유아보육료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 [지적사항]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시 대비 실제 지원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을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함 - 예비비 편성액은 2023년도(지원대상 4만 9,000명 초과) 1,383억원, 2024년도(지원대상 3만 9,000명 초과) 1,770억원임 ○ 예비비는 당해연도 부족분뿐 아니라 전년도 미지급금 충당에도 사용되었으나, 2024년 예비비 요구서에는 당해연도 부족분만 기재해 사유·금액·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2023년도 미지급금은 1,703억원(2024년 예산으로 상계), 2024년도 미지급금은 774억원임 ○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인 원 추계 방법 현실화 등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비비 요구 시에도 실제 충당 내역을 반영한 산출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작성·제출할 것	제도개선	○ ’25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이용률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 예산 편성 및 예비비 편성 억제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1) 기존 예산 편성과 달라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국회 보고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로 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비용 2억 6,700만원은 동 사업에서 집행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의 문제가 있음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개사업에서 각출하여 집행하였는데 국회에 제출한 결산설명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예산 심의·정권과 감독권에 부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기존 예산안과 다르게 집행한 모든 예산은 철저하게 국회에 보고할 것	시정	○ ’26년부터는 국가AI위원회 관련 예산을 본예산으로 활용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2) 예비비 배정·집행 시 법령상 절차 준수 및 사업목적 외 예산 전용 재발 방지 필요	○ [지적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예비비 신청 및 배정 이전에 추진하여 「국가재정법」 제51조의 예비비 사용 관련 규정과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예비비 부족을 이유로 ‘초거대AI 생태계 확산 지원’사업의 예산(5.88억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동 사업의 행사비로 사용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비 배정 및 집행시 법령상 절차 준수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주의	○ 예비비 배정·집행 시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예산 목적에 부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6. 우주항공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1) 예비비로 편성된 일반용역비의 전용 및 이월 부적절	○ [지적사항]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에 일반용역비를 예비비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2억 2,000만원(63.8%)를 전용하였고, 정책연구비(260-02목)로 전용한 9,000만원은 “우주항공진흥 기금 설치 방안 연구용역”에 배정되었으나,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액 이월되었음 - “충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는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 등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2024년 예산현액 8억 7,700만원 중 4억 6,100만원(52.6%)을 집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우주항공청은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은 예비비 전용 및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불필요한 전용·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24년 예비비 전용 항목은 개청 이후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경비에서 불가피하게 전용 소요가 발생하여 기재부 협의 및 국회 보고(사후)를 거쳐 예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계약 후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음 ○ 향후 예비비 편성 시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전용·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집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2) 예비비에 대한 집행관리 부적절	○ [지적사항] 우주항공청은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 “우주항공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경우 예비비 편성 단계부터 계획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이 되어서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연도 이월했다는 문제가 있음. - “우주항공 정보화”는 예비비로 편성된 4억 1,500만원 중 우주항공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 1억 4,300만원, 우주항공청 대표 누리집 1억 6,200만원 등 3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우주항공청은 예비비 편성 시 계획했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연말에 계약하여 이월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비비 편성 사업은 사전 준비 후 신속히 집행하고 미리 계획했던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우주항공청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사업”에 대해 2025년 7월 7일 사업종료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7월 7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3)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협약 체결 부적절	○ [지적사항] 우주항공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4호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연구개발협약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2024년에 6건의 정책 과제에 대하여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를 위반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우주항공청은 정책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하였는데, 향후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 연구협약이 아닌 별도의 절차로 관리·수행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내에서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지 않을 계획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7. 문화체육관광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1) 예산 이월 및 불용 규모 과다	○ [지적사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중 청와대 재단에 교부하는 민간위탁사업의 예산은 295억 2,700만원이고, 이 중 40억 9,500만원이 이월, 5억 7,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확한 예산 편성과 예비비 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전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	제도개선	○ (이월 사유) “청와대 (행정동) 리모델링 사업” 이월액 (4,095백만원)은 ’24.12월 계엄 상황 발생 후, 연내 후속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음 ○ (향후 계획) 예산 편성 단계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필수 소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강화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2)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 시정 필요	○ [지적사항]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연례적으로 전용·조정 및 예비비 배정을 통한 증액이 이뤄지는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전용 및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해외순방 현지 프레스센터 지원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조성 운영 경비를 동 사업 예산으로 집행한바 사업계획 수립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순방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 목적과 맞지 않은 경비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주의	○ ’26년 본 예산에 최근 4년간 평균 실집행액 규모를 편성하여 예산 현실화 (’25년)4,741백만원→(’26년)6,077백만원(1,336백만원 증액) * ’25년도 예비비 미배정, 본 예산으로 사업 추진 ○ ’25년 주요 다자 행사 별도 세부사업 편성 추진 (’25년)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313-303) 3,548백만원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조치완료

8. 농림축산식품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1) 예비비 배정절차 준수 및 사업효과 제고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에 사업비를 보전받는 형태로 예비비가 배정되어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배정 절차를 위반하고, 농할상품권 가맹점 및 결제액의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나타남. ○ [시정요구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배정 절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효과가 전 유통채널 및 전 지역에 골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가맹점 수 확충, 지역별 접근성 확대 및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제도개선	○ 예비비 편성 없이 ’25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 농할상품권은 가맹점 수를 확충하였고,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5년 추석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에는 인구비중·농할상품권 가맹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지역별 구분발행 *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업종의 가맹점 중 농할상품권 미가맹점에 대해 홍보 및 현장 모집을 통해 가맹점수 확대 (가맹점수: ’23년 5,680개소 → ’24 8,458 → ’25 8,709) * 농할상품권 2개권역(수도권/지방) 구분 발행 및 고령자 우선구매 기간 설정하여 지역별 접근성 확대 및 세대별 편의성 제고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9. 보건복지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1)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 관련 재발 방지 노력 필요	○ [지적사항]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의사 집단 행동에 따라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이용 1,986억 9,600만원 및 예비비 1,890억 6,600만원으로 마련된 예산현액 3,877억 6,200만원 중 3,81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이에 대응한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생명과 직결된 국민 피해와 수천억원 대의 예산 낭비를 유발한 것임. ○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료공백 사태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국민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24.2월 이후 의료서비스 중단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료계 간 소통 재개, 전공의 복귀 및 진료량 회복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 “해제” 완료(10.20.) ○ 아울러 국민·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혁신 위원회’를 신설하여(12.11) 공정하고 투명한 공정한 구조로 의료혁신 과제를 추진토록 제도적 기반 마련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2) 재원마련을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이·전용 시 면밀한 추계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 중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근무 수당’은 전공의 이탈에 따라 진료공백이 발생한 의료현장에 파견한 공중보건과의사와 군의관에게 파견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113억 1,8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이·전용으로 197억 7,200만원을 확보하는 등 310억 9,000만원의 예산현액을 마련하였으나, 이 중 41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이·전용 시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할 것	제도개선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5년 1-2월분은 예비비, 예산 이용 확보, 3월분 이후 부족 재원은 ’25.10월 중대본 종료 후 의료기관의 지급신청 취합, 사전심사액으로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산 이용을 추진하여 예비비 및 이용 예산 불용 최소화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3) 과건 공중보건의사 특별활동지원금의 기본급여중복 및 과다지급 주의 필요	○ [지적사항]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근무 수당’ 사업과 관련 하여,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는 파견기간 동안 원소속기관의 업무를 볼 수 없음에도 1일 8시간의 기본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일 20만원의 특별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면서(월 20일 근무 시 400만원) 동시에 본부 인건비를 통해 기본급여(월 200만원 내외)를 지급한 것은 기본근무에 대하여 보수가 중복으로 지급된 것임 ○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특별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할 경우 기본급여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제도개선	○ 특별활동지원금은 수당 성격*으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와는 중복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단가는 비상진료상황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당시 유사사례**를 근거로 하였음 * 지급근거: 농어촌의료법 제11조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운영지침(’22.8월)」, 공보의 등 근무수당은 중환자(중증·준중증) 병상 투입 시 일 20만원으로 함 ○ 향후에도 비상진료상황 발생 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중복 및 과도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4) 배정된 예비비의 전용 지양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전문의 등 인건비(휴일야간수당)’는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타 사업으로 전용(감)하였다가, 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용(증)하는 등 예산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는 배정받은 예비비를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제도개선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5년 1-2월분은 예비비, 예산 이용 확보, 3월분 이후 부족 재원은 ’25.10월 중대본 종료 후 의료기관의 지급신청 취합, 사전심사액으로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산 이용을 추진하여 예비비의 타 사업 전용 발생 차단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5)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 [지적사항] 의료개혁과제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는 국회의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운영해야 할 예비비의 제도 취지에 반함 또한 2024년 의대정원 증원 및 전공의 집단이탈 등이 발생하기 전 의료개혁을 위한 별도의 논의와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고, 의료계와의 간담회 등은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도 수행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편의적인 조직 신설과 예산 집행이 아닐 수 없음 ○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예산 투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이 ’24년 2월 확정, ’24년 4월 관련 규정(대통령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24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급성 등을 고려 ’25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배정하여 운영 ○ ’25년도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 국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으로 편성·운영하였으며, 향후 면밀하고 체계적 예산 편성으로 국회 사전의결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6)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 홍보에 대한 주의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통합 및 전략홍보’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책홍보와 가짜뉴스 대응의 시급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의사 집단행동 발생으로 예비비 90억원을 의료개혁 홍보에 지출한 것은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는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은 지출에 대하여 반성하고, 향후 예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향후 예비비 배정 시 그 요건과 필요 최소한의 규모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0. 국토교통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1) K-패스 사업 관련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지역 차별문제 해소 필요	○ [지적사항]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정기적 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의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출액의 20~53.3%를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를 통해 환급해주는 사업임 ○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K-패스 미참여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차 별 문제가 발생하고,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이 지방 도서지 역 주민들에게 참여 장벽으로 작용함 ○ 환급 예산 부족으로 400억원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매칭 지방비 부족으로 환급액 감액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시정요구사항]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및 환급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로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미지원 지역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예비비 사용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예산 추계를 면밀히 실 시하여, ’25년에는 이·전용, 예비비 사용 사례 없었음 - 아울러, K-패스 참여 지역의 확대를 위하여 참여 독려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해, ’26년 8개 기초지자체 추가 참 여(기존 210개 → ’26년 218개)하며, 전국 확대를 위하 여 지속 노력 예정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